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全)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064호, 2021.4.13.공포)됨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탑재장비의 구분(시행령안 제2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탑재장비’에 대하여 항해 장비, 갑판 장비, 기관(전기)장비, 통신 장비, 무장 장비, 항공 장비, 방제 장비,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장비 등으로 구분함.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시행령안 제3조 내지 제5조)

- 1) 기본(시행)계획을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

2)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의 개선을 위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해양경찰장비 도입·관리 관련 실태조사 범위·방법(시행령안 제6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기술현황, 국제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정함.

라. 연구·조사·기술개발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범위(시행령안 제7조)
법 제7조에 명기한 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외에도 공공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을 명기함.

마.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시행령안 제8조 내지 제10조)
해양경찰장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및 양성기관 지정 취소·업무정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바. 안전도 평가 방법(시행령안 제11조)
내용연수가 도래한 함정 및 중대한 사고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함정에 대하여 안전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범위와 시기를 정함.

사. 용도폐지된 함정의 무상양여 대상국 선정기준(시행령안 제12조)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해양경찰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에 따라 대상국가의 선정기준을 정리함.

아.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훈련(시행령안 제13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관리자에게 교육훈련을 하고, 관리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외 교육훈련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자. 감독관의 자격 기준 (시행령안 제14조)

함정설계·건조, 항공기공정관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각 감독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그에 관한 자격기준을 정함.

차. 권한의 위임(시행령안 제15조)

해양경찰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안전도 검사,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각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정비창장에 그 권한을 위임하도록 함.

카.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안 제16조)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전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 심사 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1. 항해장비
2. 갑판장비
3. 기관(전기) 장비
4. 통신장비
5. 무장장비
6. 항공장비
7. 방제장비
8. 그 밖에 함정 또는 항공기에 탑재하는 장비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탑재장비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또는 방향의 변경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 중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3. 시행계획에 반영한 신규사업의 사업비 중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제6조(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인력·기술 현황 및 그 수급 실태
2. 해양경찰장비 관련 국제동향
3.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전담인력을 5명 이상 갖출 것
- 나. 해양경찰장비 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와 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 계획서

2.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구·개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말하는 “해양경찰장비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이에 부속한 연구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해양경찰장비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8조제5항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교육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것
2.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3.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내용을 갖추는 것
4. 양성기관의 경비조달 계획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제9조(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1. 양성기관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2. 양성기관의 명칭
3. 양성기관의 주소
4. 양성기관의 업무수행범위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1. 강의료,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해양경찰장비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해양경찰장비 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
- 제10조(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1. 양성기관의 명칭·주소
2.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의 일자·기간
3.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초과한 함정의 안전도 평가(이하 “안전도 평가”라 한다)의 대상함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용연수를 초과한 함정
2.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함정
3. 그 밖에 성능이 부적합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함정

②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도 평가의 범위와 시기는 별표 4와 같다. 다

만 해양경찰청장은 대상함정의 계획정비 일정 등에 따라 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안전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 대상국가 선정 기준 등) ① 해양경찰청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무상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개발도상국과 해양안전·외교·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가능성

2. 해당 개발도상국의 해양경찰장비 등의 관리·운용 역량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방위사업청장

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개발도상국과 무상양여 대상함정의 명세, 함정의 운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양여 전 함정의 정

비에 관한 사항 등 용도폐지된 함정의 무상양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3조(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해양경찰장비의 제원(諸元: 장비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성능 및 조작방법
2. 해양경찰장비의 예방점검 요령
3. 해양경찰활동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해양경찰장비 관리·운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관리자 교육·훈련의 세부 내용 및 해양경찰장비 관리·운용능력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4조(감독관의 자격)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독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장에게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경찰장비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권한을 위임한다. 다만, 해양경찰교육원 내에서 교육 및 훈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도 평가
2.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경찰장비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제외한다)
3.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도 평가
2.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경찰장비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합정 등의 정비·수리 중 교육·훈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탑재장비의 종류(제2조 관련)

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탑재장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항해장비 : 함정의 운항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레이더, 조타장치, 전파항법장치, 전자해도 등 항행지원장치를 포함한다)
 - 나. 갑판장비 : 갑판상 설치되어 있는 장비로서 주로 함정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비(크레인, 양묘기, 단정, 소화설비, 항공기 운용을 위한 이착륙보조설비, 인명구조장비 등을 포함한다)
 - 다. 기관(전기)장비 : 주로 함정의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장비(주·보조기관, 동력전달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등과 이들의 제어장치를 포함한다) 및 함정 전력, 전자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장비(기관제어장치(MCS), 배전반, 제어설비 등을 포함한다)
 - 라. 통신장비 : 함정 내·외부와의 통신을 위해 설치된 장비(함내통신장치(인터컴), 단측파대 통신기(SSB), 위성통신장비 등 유무선통신장치를 포함한다)
 - 마. 무장장비 : 함정에 탑재된 함포 및 기타 무기(비살상무기를 포함한다) 사용 관련 장비와 그들의 연결 및 제어를 위한 장치
 - 바. 항공장비 : 항공기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열상장비, 탐조등, 인양기 등)
 - 사. 방제장비: 해상 또는 해안에 유출·부착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장비(유회수기, 이송펌프 등)
2. 「물품분류지침」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내구성물품 중 위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과 같은 지침 제2조제1호나목 상의 소모품은 탑재장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별표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2항제1호 관련)

구분	세부기준
1. 교육시설	가.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하나 이상 나. 실습을 위한 장비가 갖추어진 실습장 하나 이상
2. 인력	가.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교수요원 1명 이상 나.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운영·관리하는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3.전문교수요원의 자격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2) 해양경찰장비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8조제3항 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3항 제2호	시정 명령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 제3호	시정 명령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별표 4]

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범위 및 시기(제11조 관련)

차수별 안전도 평가 범위

구분		제1차 안전도 평가	제2차 안전도 평가	제3차 안전도 평가
강선 및 알루미늄선	선체	-현상평가 -두께측정	-현상평가 -두께측정 -강도평가 -피로강도평가(강선에 한함) -비파괴평가(알루미늄선에 한함)	제2차와 동일
	기관	-현상평가 및 효력시험 -해상시운전	-현상평가 및 효력시험 -해상시운전 -안전장치 시험	
	전기	-현상평가 및 효력시험	-현상평가 및 효력시험 -배전반 차단기 시험 및 절연 내력시험	
강화 플라스틱(FRP)선	선체	-현상평가	-현상평가	
	기관	-현상평가 및 효력시험 -해상시운전	-현상평가 및 효력시험 -해상시운전 -안전장치시험	
	전기	-현상평가 및 효력시험	-현상평가 및 효력시험	

차수별 안전도 평가 시기

구분	제1차	제2차	제3차
강선	선령 21년차	선령 24년차	제2차 안전도평가 이후 도래하는 상가수리 기간에 시행
알루미늄선 및 강화플라스틱 (FRP)선	선령16년차	선령 19년차	
〈비고〉 안전도 평가는 해당 차수로 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상가수리 기간에 시행			

[별표 5]

감독관 자격기준(제14조 관련)

1. 함정설계·건조 감독관은 함정 설계·건조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함정 설계·건조의 감독경험이 있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중 조선기술 경력채용을 통하여 채용된 자
나.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중 조선(선박) 공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다.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중 조선(선박) 공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중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조선해양관련 건조사, 설계·감리사, 연구소 및 검사기관

2. 항공기 공정감독관은 항공기 제작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선발한다.

가. 해당 기종의 제작사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의 해당 기종의 제작·정비 관련 경력을 보유한 자 (다만, 신규도입 기종의 경우 제작사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나. 해당 기종의 제작사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검사관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자

다. 항공기 도입사업 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항공기 정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해양경찰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6)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함정 및 항공기를 제외한 선박 및 항공기에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장비의 외관과 동일하게 도장하고 표시 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200	400	500

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함정 및 항공기를 제외한 선박 및 항공 기에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 여 해양경찰장비의 외관과 유사 하게 도장하고 표시 한 경우 및 표지를 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다. 해양경찰장비가 아닌 선박에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 광등을 설치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2호	90	150	300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연 락 처	(032) 835 - 2771